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6년 12월 6일 박동학 의원등 23인 제출

나. 회부일자 : 2006년 12월 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32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년 12월 12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박동학 의원)

□ 제안이유

- 부천시 영상문화단지 주차장 요금에 대하여 부천시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주차요금과 형평성 있게 조정하여 주차장 운영의 행정 신뢰를 제고함은 물론 영상문화 단지 개장 초기와 비교할 때 관람객 수가 급감한 실정에 있으므로 주차료 인하를 통한 관람객 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분리하여 요금표를 적용하였던 승합, 버스, 화물자동차 등에 대하여 부천시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주차요금과 형평성있게 조정하여 적용함.
 - 승용차, 15인승미만의 승합차, 25톤 미만의 화물차에 대한 주차요금을 2천원에서 1천원으로 조정함. (안 별표 4)
 - 15인승 초과 승합 및 버스 또는 25톤 초과 화물자동차와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에 대해 3천원으로 조정함.

3.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답 변
○ 영상문화단지 주차장 운영 수입에 대하여 ?	○ 2002년도 부터 지금까지 해를 거듭 할수록 수입금액이 감소하고 있음.
○ 2006년도 10월말 현재 수입은 ?	○ 10월말 2억 정도이며 연말까지는 5 천만원 정도 증가될것로 예상함.
○ 현재 관리인원과 수입, 지출대비는 ?	○ 3개소 10명이며 직원 보수는 지출될 수 있음.
○ 조례 개정에서 25인승 초과 버스, 4.5톤 초과 화물자동차를 1회 3,000 원으로 인하해 주는 것은 본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	○ 영상문화단지는 방문객에게 저렴한 주차요금을 부과하여 이용객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며, 반면 재정수익을 올리는 목적은 아니었으나, 현재는 이용객이 감소하고 있어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 측면도 고려해야 하고 공영주차장의 성격으로 볼때 대형차량도 주차하게끔 하는 것이 좋으나 대형 자동차가 주차시 관리운영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수 있다고 판단됨.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수정 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번호	관련 제69호
의결년월일	2006. 12. 21

제안년월일 : 2006. 12. 12

제안자 : 건설교통위원장

1. 수정이유

- 영상문화단지 부설주차장은 승용차, 버스를 이용하는 방문객에게 저렴한 주차요금을 부과하여 우리시의 문화시설을 관람할수 있도록 주차편리를 제공하는 목적이나,
- 지금은 방문객의 급감으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과 주차장 활성화 차원에서 대형 자동차에게도 주차요금을 인하하여 운영한다면 주차장 공간협소, 야간 시간대를 이용한 주차로 시설물 관리·운영 부재, 정비·보수비용의 과다 소요 등 문제점이 예상되어 대형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은 탑승 정원수와 배기량에 따라 주차요금을 부과함.

2. 주요골자

- 부천시 주차장 조례 제6조 별표4 “부천시영상문화단지 주차장 요금표”에서 “15인승 이상 25인승 이하 승합차 또는 버스와 2.5톤 이상 4.5톤 미만의 화물 자동차는 1회 주차요금을 3,000원으로 한다.”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 별표4)
- 부천시 주차장 조례 제6조 별표4 “부천시영상문화단지 주차장 요금표”에서 “25인승 초과 버스 및 4.5톤 초과 화물자동차와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1회 주차요금을 5,000원으로 한다.”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 별표 4)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15인승 이상 25인승 이하 승합차 또는 버스와 2.5톤 이상 4.5톤 미만의 화물 자동차는 1회 주차요금을 3,000원으로 한다.” 규정을 신설함.

(안 제6조 별표4)

- “25인승 초과 버스 및 4.5톤 초과 화물자동차와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1회 주차요금을 5,000원으로 한다.” 규정을 신설함.

(안 제6조 별표4)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별표 4]			[별표 4]			[별표 4]		
구분	차종	요금	구분	차종	요금	구분	차종	요금
1회 요금	승용차, 15인승 미만의 승합차, 2.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2,000원	1회 요금	승용차, 15인승 미만의 승합차, 2.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1,000원	1회 요금	승용차, 15인승 미만의 승합차, 2.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1,000원
	15인승 이상 25 인승 이하 승합차 또는 버스와 2.5톤 이상 4.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3,000원		15인승 초과승합차 및 버스 또는 2.5톤 초과 화물 자동차와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3,000원		15인승 이상 25 인승 이하 승합차 또는 버스와 2.5톤 이상 4.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3,000원
	25인승 초과 버스 및 4.5톤 초과 화물 자동차와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5,000원		25인승 초과 버스 및 4.5톤 초과 화물 자동차와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5,000원			
<p>※ 주차요금의 부과기준 및 주차요금 감면은 공영주차장 기준을 적용한다.</p>			<p>※ 생략</p>			<p>※ 개정안과 같음</p>		

[수정안 포함]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승용차, 15인승 미만의 승합차, 2.5톤 미만의 화물차의 요금란중 “2,000원”을 “1,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